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지난 2017년 7월 당시 베를린에서 처음 만난 두 정상이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싱가포르 순방 新남방정책 '광폭 행보'

오늘부터 5박6일 일정 방문 파푸아뉴기니서 APEC 참석

1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를 잇따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한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권 소속 주요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가속화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는 접견을 조울 중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또 17~18일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에 머문다.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우리 정부의 핵심 전략 과제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1~10월) 1228억 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21억

달러로 7.6%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한·아세안 교역규모는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앞서 관련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천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사람공동체, 상생번영공동체, 평화공동체의 '3P'에 대해 분야별로 상세한 이행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세안측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최종합의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관련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함께 표명할 방침이다.

이는 '넥스트 베트남'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콩 지역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아세안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내 개발 격차 완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이어지는 다자간 회의를 통해 역내 금융안정망 구축과 쌀 비축제도를 통한 식량안보 증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국가간 협력,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동참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왼쪽부터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김명훈 기획정책위원장, 최오규 회장, 법무법인 바른 김재호 대표변호사, 윤은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가톨릭의대 동문회와 MOU

법무법인 바른은 가톨릭의대 의과대 총동문회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맺은 협약에 따라, 바른은 가톨릭 의대 총동문회 소속 6000여명의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민·형사, 행정 소

송부터 법률 자문까지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호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들의 의료분쟁 상담과 소송을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양측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경제특구 선택 → 아이템 발굴 → 공동진출

중소, 순차적 北 진출 바람직

先평양·남포-後지방 진출 경박단소서 중후장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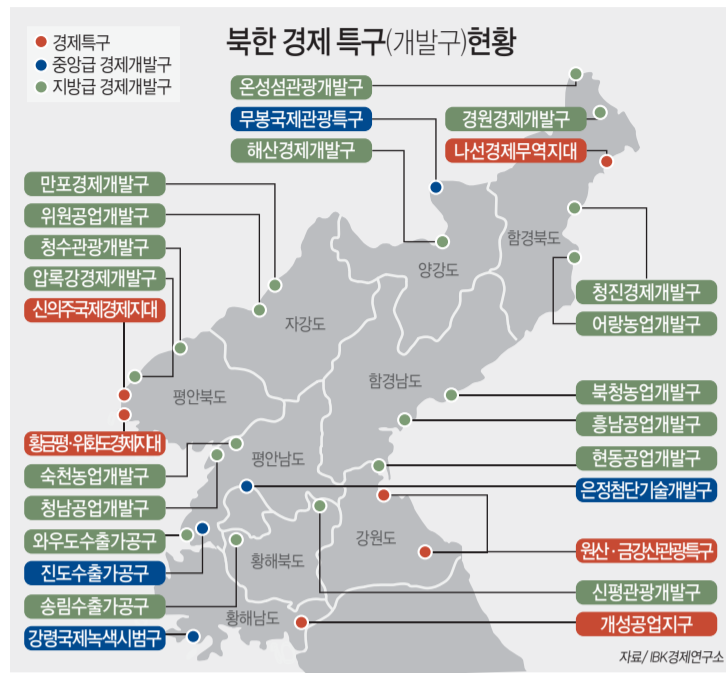
'진출할 경제특구를 먼저 선택하라. 아이템을 잘 정해라. 기업간 공동진출을 모색해라.'

남북 경제협력이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경제특구 선정 ▲진출 아이템 선택 ▲진출 환경 진단 ▲명확한 진출 목적 설정 등 보다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또 남북경협은 체제와 이념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의식, 사회작동원리가 다른 것에 유의해 법적·제도적 현황 파악→남북 산업 표준 점검→경영 및 기술교육 등 진출을 위해 사전에 단계별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회와 함께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북한 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남북경협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엔 당과 내각이 관리하는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가 5곳, 국가경제개발위원회나 각도 인민위원회 등이 관리하는 온성심관관광개발구 등 중앙급 경제개발구가 6곳, 경제지대개발구 등이 관리하는 온성심관관광개발구 등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곳 등이 있다.



지역도 개성을 비롯해 원산·금강산,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나선, 은정, 진도, 무봉, 만포, 해산, 청남, 송림, 흥남, 신평 등 북한 전역에 골고루 위치해 있다.

조봉현 부소장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특징은 점점 및 해안뿐만 아니라 평양에 이르기까지 전지역에 포진돼 있다"면서 "또 공업, 무역 첨단 등 단일 유형과 수출가공, 현대 농업, 관광 휴양 등 다수 유형이 복합된 형태에 평균 개발면적이 3.4㎢에 이를 정도로 소규모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경제개발구는 투자, 세금납부, 토지 및 건물 이용, 금융거래 등에서 여러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업종 중에선 전자 및 자동차 공업, 기계제작공업, 농업, 과학연구, 식료품, 피복

가공, 일용품 등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 보도, 방송, 교육, 문화, 보건, 체신 등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조 부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한 곳으로 ▲라선 경제특구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신의주 경제특구 ▲강령 국제녹색시범지구 ▲무봉국제관광특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꼽았다.

북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챙겨야 할 내용도 많다. 인프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고르고, 국내산업과의 연관성을 높이면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아이TEM을 선정하되, 막연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중소기업이 지향해야 할 사업 추진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질의 북한 노동력 활용이 가능한지, 원자재 조달이나 공장 확보가 용이한지, 기술협력 가능성과 북한 내수시장 선점은 가능한지 등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부소장은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고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간 협력이나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공동진출하면 북한의 투자환경 변화에 공동 대처할 수 있고, 물류비나 기타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지금의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교류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면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평화자동차총회사에서 총사장을 역임한 조영서 한라대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북한 진출 시 선(先)평양·남포 진출, 후(後)지방, 경박단소서에서 시작해 향후엔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순차적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통일 후 법률시장, 실정 아는 北변호사 양성해야”

통일시대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

北 직업적 권리는 보장해주고 南 사법제도와와의 통합 이뤄야

통일 이후 폭증할 북한의 법률 수요를 현지 변호사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수 변호사는 12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에서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의 법률문제는 북한 변호사들이 맡을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산의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만큼이나 변호사의 역할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하더라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반면 북한 변호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익의 대변자로서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변론 활동은 의뢰인 개인의 이익이 아닌 프롤



김기수 변호사가 12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에서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범종 기자

레타리아 계급과 사회주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독일 사례는 통일 이후 변호사제도 통합의 단초를 보여준다. 구 동독 변호사는 1950년대 이후 사회주의 이념 실현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주어졌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법원의 결정을 적극 설명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변호사의 독립성이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다. 구 동독 인민회의는 1990년 2월

'자유 변호사의 업무 및 허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변호사가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위를 허용했다. 같은해 4월과 6월 관련 법률 제정으로 구 서독 변호사의 동독 내 법률사무소 설치와 활동이 가능해졌다.

구 동독 변호사 역시 서독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다. 독일은 법과대학 학위 취득 후 2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동독 변호인을 제2차 국가고시 없이 서독 변호사와 동등하게 인정했다. 기존 변호사들은 서독 변호사단체가 연방법무부가 부담했다.

주목할 부분은 동독 공산당의 불법 행위에 협조하고 반법치국가적 행위를 자행한 전력이 확인될 경우, 변호사인격을 취소하거나 철회한 점이다.

김 변호사는 "인권 탄압에 협조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에 보관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이후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를 해결책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법률보험제도 실시 ▲법률구조공단 확대 운영 ▲북한 변호사 자격의 일정기간 유지 ▲한국 변호사의 북한 지역 활동을 위한 업무매뉴얼과 지침 개발 ▲한국 내 로스쿨의 북한지역 주민 특례입학 제도 한시적 도입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통일 초기 북한 변호사 제도는 북한 사법체계의 변화와 연계돼 변동될 것"이라며 "가급적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적 권리는 그대로 보장하되,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남한의 사법제도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독은 서독기본법을 동독에 철저히 동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통일 이후 발생하는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해 변호사제도의 통합이 없이는 갈등을 줄이기 힘들고, 통일한국의 법치국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범종 기자 joker@